
SEDEX 2026 구미시 홍보관 조성 시 방 서

2026. 09.

I 공 사 개 요

1. 용역명: SEDEX 2026 구미시 투자유치 홍보관 조성
 2. 목적: 투자유치 활동 · 구미시 홍보를 위한 SEDEX 2026 독립부스 설치 및 철거
 3. 개요
 - 설치: 2026. 10. 11.(일). ~ 2026. 10. 13.(화)
 - 철거: 2026. 10. 16.(금). ~ 2026. 10. 17.(토)
 - 장소: 코엑스(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) 전시장 C홀 (C245 부스)
 - 크기: 15m x 6m (가로 x 세로 기준)
 4.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6. 10. 17.(토)까지
 5. 공사의 내용
 - SEDEX 2026 기간 중 구미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부스의 설치 및 철거
 - 세부내용
- 부스규모 및 설치 형태
- 부스구조 : 목공부스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재의 자재(방염 처리 필수)
 - 부스규모 : 독립부스 10부스(가로15m*세로6m형태, 1부스 3m*3m기준)
 - 참가기업 : 구미시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+ 4개사 (4면 개방 형태)
 - ※ 구미시,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구조를 기본으로 4개사 별도 전시공간 구성
 - 참관객들의 부스 내부 출입이 용이한 형태로 부스 디자인 구성
 - 참가기업 부스 외 별도의 공용 상담공간, 휴게 공간 구성
 - 공용 상담공간 외 소규모(4인~6인) 프라이빗 미팅룸 설치
 - 참여기업 개별 제품 전시대 설치
 - 부스구성(안)

구 분	내 용
기업부스	▷ 부스규모 : 3m*3m 4부스 내외(참여기업 1개별 3m*3m 내외 면적) ▷ 부스구성 : 참여기업 제품 전시대 및 홍보 물품 전시용 공간
공용공간	▷ 부스규모 : 3m*3m 6부스 내외 ▷ 부스구성 : 구미·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보관, 인포데스크, 카페테리아, 창고, 공용회의공간, 미팅룸 등

※

기업부스와 공용공간 간 부스 구성 및 개별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

○ 참고도면



II 과업수행일반지침

1. 적용범위

본 과업지시서는 SEDEX 2026에 참가하는 구미시 홍보부스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. 이하 구미컨벤션센터(구미코)를 “발주기관”이라 하고 용역 수행하는 업체를 “계약상대자”라고 한다.

2. 일반지침

가. 일반적 의무사항

- 1)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발주기관측 직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속,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작업에 소요되는 인원, 장비,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 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4)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5)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관계법규 등 적용

- 1) 관련 법령에 의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, 지방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.
- 2)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본 지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3) 본 과업의 수행 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다. 공사 기본사항

- 1) 작업 전 해당 장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2) 설치 후 수정 보완 사항이 발생 시 협의 후 수정 보완 한다.

라. 설치 작업 현장 관리

- 1)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,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(안전교육 실시 근로자 서명 날인 제출)

마. 손해배상 및 사고 발생 시 처리

- 1)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여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,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,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,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III 안전 및 기타사항

1. 안전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참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당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
2. 기타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발생한 부자재 및 폐기물 수거 등 주위 환경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나. 본 시방서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